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782-01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제정 연구

2024. 02. 28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782-01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제정 연구

2024. 02. 28.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제정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02. 28.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한 영 수



##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정연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목 차

1.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주요내용 .....	3
(3) 연구의 추진체계 .....	12
(4) 연구의 추진방법 .....	13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입법해설 .....	14
(1) 총칙(제1장) .....	14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제2장) .....	15
(3)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제3장) .....	39
(4) 사업의 시행(제4장) .....	50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제5장) .....	55
(6) 보칙(제6장) .....	68
(7) 벌칙(제7장) .....	76
3.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입법해설 .....	78
4. 하위법령 제정(안) 별표 및 서식 .....	97
(1) 시행령 별표 .....	97
(2)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101
5.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개선과제 .....	107
부록-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 행 령 .....	115
부록-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	131



# 1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추진배경

#### (a)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제정

-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라 함)이 법률 제19286호로 제정되어, 2024년 3월 29일 시행될 예정임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의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됨
-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총 7개의 장(총칙,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사업의 시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보칙, 벌칙)과 4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그 전체적인 입법체계 및 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입법체계와 규정내용】

장	조	규정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제정 연구

	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제12조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5조	주민제안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1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17조	농촌협약의 신청
	제18조	농촌협약의 평가
	제19조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제20조	농촌협약의 관리
	제21조	통합지침
	제22조	주민협정의 체결
	제23조	주민협의회
	제24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25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4장 사업의 시행	제26조	사업시행자
	제2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28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29조	사업시행 방식
	제30조	토지 등의 수용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제5장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의 추진체계	제32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33조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34조	지원조직
	제35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제6장 보 칙	제3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 한 감독 및 조정
	제39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4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제4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4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7장 벌 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부 칙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b)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에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 이와 같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령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는 경우,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게 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점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신규 제정법이라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특성상 하위법령의 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고 있음
- 일반적으로 법령의 “시행”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원활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2024년 3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입법과정 지원을 위한 대응자료 및 조문별 입법해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주요내용**

**(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a) 법률체계 및 정합성 검토**

- 법령 입안의 핵심은 헌법이념의 실현을 전제로 하여 법령이 헌법과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전체 법령체계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정확하게 해당 법령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에 있음

- 또한 법령 입안의 주요한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체계와 내용이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의미함
- 따라서 법령 입안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려는 법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같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법제도를 창설할 때에는 이 원칙의 엄격한 준수가 요청됨
-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법률체계를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현황 또는 한계를 진단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하위법령 제정(안)의 헌법적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함
- 즉, 일반적으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해당 제정 법률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사항인지,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인지 등에 대하여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법의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b) 위임사항 및 법령체계 설정**

- (위임사항 분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6조 제3항),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총 53건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농촌생활서비스시설(제2조 제13호), 주민협의회 설립승인 절차 및 방법(제23조 제3항) 등 총 5건을 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b>제1장 총칙</b>			
제2조	정의		- 농촌생활서비스시설(제13호) - 농촌위해시설(제14호) - 통합지침(제16호)
<b>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b>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 기본방침 포함사항(제3항) - 기본방침 수립·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제외 경미한 사항(제5항)</li> <li>- 기본방침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제6항)</li> </ul>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제4항)</li> <li>- 기초조사 전문기관 위탁(제5항)</li> <li>-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제6항)</li> </ul>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제1항 본문)</li> <li>- 공청회 개최 제외 경미한 사항(제1항 단서)</li> </ul>	
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도지사 등 승인(제1항 본문)</li> <li>- 승인 제외 경미한 사항(제1항 단서)</li> <li>- 기본계획의 공고(제3항)</li> </ul>	
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제3항)</li> </ul>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도지사 등의 승인(제1항 본문)</li> <li>- 승인 제외 경미한 사항(제1항 단서)</li> <li>- 시행계획의 공고(제3항)</li> </ul>	
제12조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제1항 제8호)</li> <li>-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제2항)</li> </ul>	
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제2항)</li> <li>-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등 작성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제3항)</li> </ul>	
제15조	주민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제안 요건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제3항)</li> </ul>	
<b>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b>			
제1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제3항)</li> </ul>	
제17조	농촌협약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협약 신청 시 붙임 서류(제1항)</li> </ul>
제22조	주민협정의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협정서 인가(제3항)</li> <li>- 주민협정서 공고(제4항)</li> <li>-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제5항)</li> </ul>	
제23조	주민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협의회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제5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제3항)</li> </ul>

제24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협정 변경·폐지 시 인가 제외 경미한 사항(제1항)</li> <li>-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자(제2항)</li> <li>-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제3항)</li> </ul>	
제25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협정 이행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제출(제3항)</li> </ul>	
<b>제4장 사업의 시행</b>			
제26조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제1항 제2호)</li> </ul>	
제2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포함사항(제2항 제12호)</li> </ul>	
제28조	사업계획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제1항 본문)</li> <li>- 승인 대상 제외 경미한 사항(제1항 단서)</li> <li>- 사업계획 고시(제3항)</li> </ul>	
<b>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b>			
제32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책심의회 기능 대체 위원회·심의회 등(제1항)</li> </ul>	
제33조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 기능 대체 조직 등(제1항)</li> <li>-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4항)</li> </ul>	
제34조	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조직의 기타 업무범위(제2항 제8호)</li> <li>- 지원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4항)</li> </ul>	
제35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원기관의 지정(제1항)</li> <li>- 광역지원기관의 지정(제2항)</li> <li>- 기초지원기관의 지정(제3항)</li> <li>-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제5항)</li> <li>- 지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제6항)</li> </ul>	
<b>제6장 보칙</b>			
제3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구조화 등의 평가 기준·주기·절차·방법과 결과의 공개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제3항)</li> <li>-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제4항)</li> </ul>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의 위임(제1항)</li> <li>- 사무의 위탁(제2항)</li> </ul>	
제41조	국유재산·공유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 등의 농촌공간 재구조화</li> </ul>	

	등의 처분 등	및 재생 사업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제4항 제1문) -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제4항 제2문)	
제4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지방세 감면 시 승인(제2항)	
제44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항)	
<b>제7장 별칙</b>			
제47조	과태료	- 과태료 부과기준(제2항)	
<b>위임사항 합계</b>		53건	5건

- (법령체계 설정) 하위법령의 입법체계는 법률에서 장·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해당함
- 다만,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경우 대통령령에 총 53건, 부령에 총 5건을 각각 위임하고 있어, 법령의 규모로 보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은 법률과 유사한 입법체계(“장” 구분)로 구성할 수 있는 한편, 동 시행규칙은 위임사항이 적어 장의 구분 없이 조문만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c) 구체적인 하위법령 제정(안) 작성

- (제정안 입법체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의 경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총 53건이나, 위임사항을 통합·정리하여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입법체계의 구성원칙에 따라 규정 내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총 7개의 장으로 구분함
- 즉,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입법체계에 따라 제1장(총칙), 제2장(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3장(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4장(사업의 시행), 제5장(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6장(보칙), 제7장(별칙)으로 구분함
- 다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의 경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총 5건에 불과하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입법체계의 구성원칙에 따라 “장”의 구분 없이 조문을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함
- 이상에서 서술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입법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안) 입법체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제 1 조(목적)</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b></p> <p>제 2 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제 3 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제 4 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 5 조(기본계획의 승인)                      제 6 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제 7 조(시행계획의 승인)                      제 8 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 9 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b></p> <p>제10조(농촌협약)                      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공고 등)                      제12조(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사업의 시행</b></p> <p>제15조(사업시행자)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b></p> <p>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의 구성·운영)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보칙</b></p> <p>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제26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벌칙</b></p> <p>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p>	<p>제 1 조(목적)                      제 2 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제 3 조(농촌위해시설)                      제 4 조(통합지침)                      제 5 조(농촌협약의 신청)                      제 6 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제 7 조(주민협약회의의 설립 승인)                      제 8 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                      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제 9 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                      업계획 승인 신청서)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                      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제12조(규제의 재검토)</p>
<b>총 7개장 27개조</b>	<b>총 12개조</b>

**(d) 하위법령 제정(안)의 작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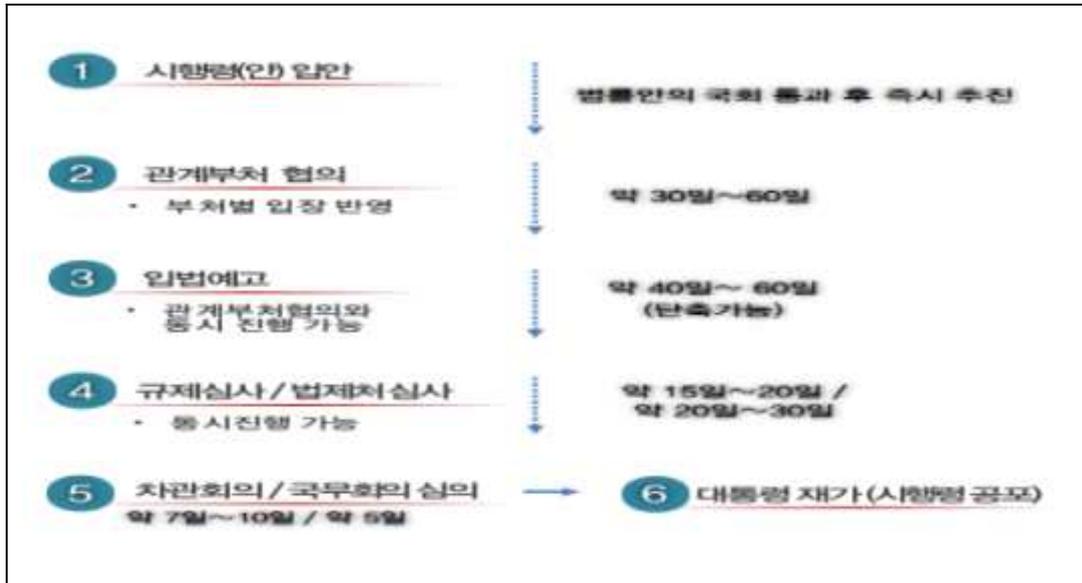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구체적 입안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 및 정부입법 심사기관인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 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 (소관사항 준수의 원칙)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 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 여, 소관사항 준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상위법령 우선의 원칙) 이것은 모든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하나의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 원칙 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의 입안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규 정하고 있음
- 헌법 제74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구체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이상에서 서술한 법령입안의 헌법적 기준에 따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 정(안)을 입안함으로써,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입법기술적 완성 도 및 실무적 가치를 제고하고, 헌법적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입법지원 대응자료 및 입법해설 제공**

**(a) 입법지원 대응자료 제공**

- (하위법령 입법과정)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의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하위 법령(안) 입안,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 회의 심의(대통령령), 대통령 재가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됨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시행령) 입법절차】**



- 참고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헌법 제89조 제3호),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부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서명·공포하면 됨
- 여하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치게 되며,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서는 신설된 규제의 타당성 및 영향 심사가 행해지고, 법제처 심사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
- (입법과정 대응지원) 이러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의 입법과정에서는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요청이 예상되는 바, 30년 이상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한국행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적시에 관련 대응자료를 작성·제시하고자 함

**(b) 조문별 입법해설 제공**

- 전술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의 입법과정 중에서 특히 법제처 심사의 경우, 하위법령 조문별 제정이유, 유사 입법례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조문, 입법취지, 주요내용, 입법사례”로 구성되는 조문별 입법해설을 제공하고자 함

- 이러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조문별 입법해설에서는 다년 간 축적된 기타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경험을 충분히 살려, 완성도 높은 입법해설을 제공하고자 함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도출**

**(a)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 하위법령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령의 현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필요한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입안과정에서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b) 쟁점사항 도출 및 쟁점별 토론회 개최**

- 입법예고 기간 또는 전술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법리적·입법기술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쟁점별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의 하위법령 반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법리적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및 입법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가회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반영 가능한 사항을 수시로 반영하고자 함

**(c) 반영여부의 장단점 분석 및 시나리오 마련**

- 전술한 쟁점별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도출된 반영 가능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에 따른 장단점을 법리적·입법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발주처와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하위법령 제정(안) 쟁점조문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 하위법령 제정(안) 반영 시 예상되는 장단점 및 필요한 경우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전문가회의 또는 워크숍이나 서면자문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단점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거나 대안의 적절성 등을 진단하고자 함

### (3) 연구의 추진체계

#### (가) 연구진 역할분담

- 책임연구원은 연구 총괄 및 하위법령 제정(안)의 최적 모델 수립, 연구원은 하위법령 제정(안) 작성 및 검토, 연구보조원은 연구지원 및 행정지원, 자문위원단은 연구 내용 및 성과의 적절성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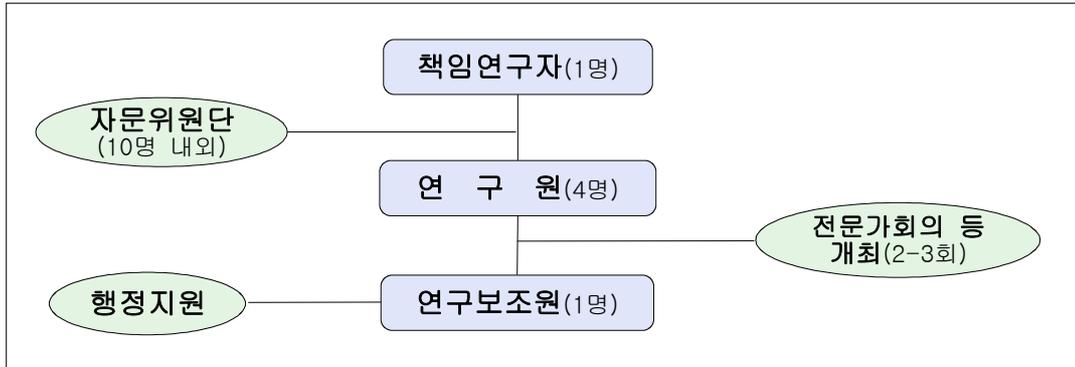
**【연구진 역할분담】**

구 분	업무분장 내역	비고
책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 총괄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최적모델 수립</li> <li>•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의 법리적 분석 및 입법기술적 타당성 검토</li> <li>•토론회 및 전문가회의 등 주관</li> </ul>	1명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 작성 및 검토(이세정 박사)</li> <li>•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입법과정 지원 및 대응 자료 작성 및 검토(최경호 박사)</li> <li>•입법 취지 및 유사 입법례 등 입법해설의 작성 및 검토(황헌순 박사)</li> <li>•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도출(류지성 박사)</li> </ul>	4명
자문위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내용의 타당성 점검</li> <li>•연구방향의 합리성 및 연구성과의 적절성 검증</li> <li>•전문가회의 및 토론회 등에의 참석 및 의견 개진</li> </ul>	10명 내외
연구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행정업무 수행</li> <li>•보고서, 자료집 등 편집 및 발간업무 수행</li> </ul>	1명

#### (나) 연구팀 전체구성

-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구성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그 밖에 상시적으로 자문 또는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 10명 내외)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고자 함

**【연구팀 전체구성】**



**(4) 연구의 추진방법**

**(가) 문헌조사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을 위하여 이에 관한 기존의 논문·보고서 등의 연구성과, 각종 관련법령 및 정책자료 등을 기초로 조사·분석하는 문헌조사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입법론적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리적·입법기술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론적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추진하고자 함

**(다) 실태조사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실무적 가치 및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학계 및 실무계의 법제전문가 등으로부터 법리적·입법기술적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실태조사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추진하고자 함

##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입법해설

### (1) 총칙(제1장)

#### ◇ 목적(제1조)

<b>시행령(안)</b>
<b>제1조(목적)</b>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제정이유

- 목적규정은 법령의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해당 법령이 달성하려는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히고,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의 경우도 목적규정을 두어 입법 목적 및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령의 개별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함

####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을 해석·집행할 때 개별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함

####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제2장)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변경(제2조)

시행령(안)
<p><b>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변경)</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li> <li>2.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li> <li>3. 농촌 경제·산업 구조 현황</li> <li>4.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분포 및 이용·제공 현황</li> <li>5. 농촌 토지 이용 및 경관 보전·관리 현황</li> <li>6. 농촌의 난개발 요소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li> <li>7. 그 밖에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방침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및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6조에서는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제5항에서는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을 각각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6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조요청(제

1항),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항),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농촌 경제·산업 구조 현황,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세부적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기본방침의 현장성 및 실무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계획수립권자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기초조사정보체계(이하 “기초조사정보체계”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 2-3. <생략> ⑤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 입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생략> ② 공업지역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령명	조문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④ <생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제3조)

<b>시행령(안)</b>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공간의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할 것
2. 농촌공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것
3. 농촌의 생활기능과 생산기능을 위한 토지의 조화로운 이용을 촉진할 것
4. 농촌의 개발·이용·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
5. 농촌 자원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할 것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본계획 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기초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기본계획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초조사의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제2항에서는 기초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기초조사의 위탁기관 등을 각각 규정함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별 기초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며, 기초조사 위탁기관을 명시하여 기초조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계획수립권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기초조사정보체계(이하 “기초조사정보체계”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 2-3. <생략> ⑤ <생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

법령명	조문내용
시행령	<p>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i> <li>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li> <li>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li> </ol>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li> <li>2. 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li> <li>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절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li> <li>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li> <li>5.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li> <li>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li> <li>7.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li> </o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li> <li>2.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li> <li>3. 도시·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li> </ol>

법령명	조문내용
	<p>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p> <p>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의 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p> <p>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p> <p>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p> <p>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p> <p>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p> <p>9.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p> <p>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p> <p>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p>

◇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제4조)

시행령(안)
<p><b>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b>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일간신문,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최 목적</li> <li>2. 개최 일시 및 장소</li> </ol>

3. 공청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4. 그 밖에 공청회의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공청회 개최의 공고 방법·기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의 방법을 규정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함

**(다) 입법효과**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서 개최되는 공청회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청회의 개최목적</li> <li>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li> <li>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li> <li>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p>
경관법 시행령	<p>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청회 개최목적</li> <li>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li> <li>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li> <li>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li> </ol> </li> <li>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li> </ol>
국토기본법 시행령	<p>제4조(공청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청회의 개최 목적</li> <li>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li> <li>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li> <li>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li> <li>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p>

법령명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청회의 개최목적</li> <li>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li> <li>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li> <li>4.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p> <p>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군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p>

◇ 기본계획의 승인(제5조)

시행령(안)
<p><b>제5조(기본계획의 승인)</b>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립·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li> <li>2. 기본계획기초조사의 결과(기본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li> <li>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li> <li>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li> </ol>

심의 결과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2항에서는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자료의 추가 제출을, 제3항에

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4항에서는 승인 후의 공고 방법 및 열람기간 등을 각각 규정함

(타)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승인의 제외사유를 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p>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조사 결과</li> <li>2. 공청회 개최 결과</li> <li>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li> <li>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li> <li>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li> </ol> <p>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결과</li> <li>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li> <li>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li> <li>4.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li> <li>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군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시·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를 말한다]</li> </ol> <p>② &lt;생략&gt;</p> <p>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p>

법령명	조문내용
	상으로 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li> <li>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li> <li>3.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li> </ol>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li> <li>2. 법 제7조제3항제9호에 따른 단계적 복원계획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li> <li>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li> </ol>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제6조)

시행령(안)
<p><b>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①</b>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목표·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li> <li>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이 공간적으로 통합·연계될 수 있을 것</li> <li>3.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li> <li>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조화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li> </ol>

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시행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0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기준(제1항), 기초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조 요청(제2항)을 각각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3항)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계획수립권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행계획의 방향과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그 구체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li> <li>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li> </ol>

법령명	조문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li> <li>4.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li> <li>5.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li> <li>6.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할 것</li> <li>7.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칠 것</li> </ol>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li> <li>2.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li> <li>3. 도시·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의 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li> <li>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li> <li>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li> <li>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li> <li>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li> </ol>

법령명	조문내용
	<p>9.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p> <p>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p> <p>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p>

◇ 시행계획의 승인(제7조)

<b>시행령(안)</b>	<p><b>제7조(시행계획의 승인)</b>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립·변경하려는 시행계획의 내용</li> <li>2. 시행계획기초조사의 결과(시행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li> <li>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li> <li>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li> <li>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p>
---------------	--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의견(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그 단서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서류(제1항),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확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청취(제2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항)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

(타) 입법효과

- 시행계획의 승인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행계획의 승인과 그 후속조치의 법적 효력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승인의 제외사유를 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p>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조사 결과</li> <li>2. 공청회 개최 결과</li> <li>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li> <li>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li> <li>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li> </ol> <p>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p>
<p>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li> <li>2. 농촌융복합산업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중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li> <li>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li> </ol>

◇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제8조)

<p><b>시행령(안)</b></p>	<p>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도서 등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3조에서는 특별자치시와 시·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제2항),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등의 작성 방법과 지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지정기준을 [별표 1]로 규정하고(제1항),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의 협의(제2항), 농촌특화지구의 도서(제3항) 등을 각각 규정한 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4항)

(타)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고, 지정의 혼선을 예방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의 협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 환경의 조성 및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중 계획도의 작성 방법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특화지구의 도서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①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p><b>■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2]</b></p> <p style="text-align: center;"><b>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b>(제35조의2제1항 관련)</p> <p>1. 복합지구의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주거상업고밀지구</p> <p>나. 주거산업융합지구</p> <p>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p> <p>2. 제1호 각 목에 따른 복합지구의 유형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p> <p>1) 역세권 등 접근성은 양호하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조한 지역일 것</p> <p>2)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p> <p>3) 역승강장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의 과반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 전체를 포함한 지역으로 할 수 있다.</p> <p>4)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p>	

법령명	조문내용
	<p>5) 용도지역의 종류, 호수(戶數) 밀도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p> <p>나.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거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일 것</p> <p>2)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p> <p>3) 가목4) 및 5)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p> <p>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p> <p>1) 20년 이상 경과한 지층 노후주거지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p> <p>2)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p> <p>3) 가목4) 및 5)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p> <p>3. 제2호가목4)·5)·나목3) 및 다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합이 복합지구로 지정할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가목4)·5)·나목3) 및 다목3)에 따른 노후건축물비율, 용도지역의 종류 및 호수 밀도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토지</p> <p>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p> <p>4. 지정권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연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한 지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p>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7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개발수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8조(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군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p>

법령명	조문내용
	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절차(제9조)

시행령(안)
<p><b>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b>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공유지는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p> <p>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p> <p>가. 사업 목적</p> <p>나. 사업 내용</p> <p>다. 사업 비용</p> <p>라. 사업 기간</p> <p>마. 기대 효과</p> <p>바.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p> <p>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p> <p>나.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p>

- 다. 농촌특화지구의 정비 및 관리 방향
  - 라.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 마.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 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사.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및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5조 제3항에서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제안 요건 및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의 제안서, 제안서 제출 시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규정하고(제1항), 제안서 반영여부 통보 및 통보기한에 관하여 규정함(제2항)

####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9조에서 주민제안의 구체적 내용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제안의 구체성 및 처리절차의 명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주민제안제도의 도입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제23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li> <li>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위치 및 면적</li> <li>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li> <li>4.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li> </ol> <p>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p>

(3)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제3장)

◇ 농촌협약(제10조)

시행령(안)
<p><b>제10조(농촌협약)</b>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약의 목적</li> <li>2. 협약의 변경·해지</li> <li>3.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li> <li>4. 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6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제3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농촌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후(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그 밖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5호)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농촌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촌협약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p>제19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p>

법령명	조문내용
	<p>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p> <p>⑦ 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li> <li>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li> <li>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li> <li>4.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li> <li>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li> </ol>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p>

◇ 주민협정의 인가·공고 등(제11조)

시행령(안)
<p><b>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공고 등)</b>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주민협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인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주민협정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 여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정을</p>

인가했을 때에는 그 내용(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2조에서는 주민협정의 체결, 주민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협정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 신청 절차 및 인가 후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민협정 인가(변경인가, 폐지인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주민협정서의 보완 요청(제2항), 인가여부 통보(제3항), 공고(제4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주민협정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협정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

법령명	조문내용
	<p>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보험업법 시행령</p>	<p>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상호협정 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li> <li>나.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li> <li>다.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li> <li>라. 상호협정을 하려는 사유</li> <li>마.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li> <li>바.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li> </ol> </li> <li>2.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li> <li>나. 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li> <li>다. 상호협정을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 내용</li> </ol> </li> <li>3.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li> <li>나. 상호협정 폐지의 효력 발생시기</li> <li>다. 상호협정을 폐지하려는 사유</li> </ol> </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li> <li>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li> </ol> <p>③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li> <li>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li> <li>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수정·반영해야 하는 사항</li> </ol>

- (참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9는 별지 서식(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의 입법례에 해당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는 별도의 신청서 서식을 규정하지 않는 입법례에 해당함

◇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 등(제12조)

시행령(안)

**제12조(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주민협약회의의 위원은 협정체결자의 투표로 선임하고, 주민협약회의 대표자는 주민협약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주민협약회의의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협약회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주민협약회의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주민협약회의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 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주민협약회의의 회의는 주민협약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표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약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협약회의가 정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3조에서는 주민협약회의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주민협약회의의 설립, 구성, 승인 및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는 주민협약회의의 운영,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주민협약회의 위원 및 대표자의 선임 방법을 규정하고(제1항), 주민협약회의 회의 및 운영에 있어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한 후(제2항, 제3항, 제4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약회의가 정하도록 함(제5항)

(타) 입법효과

-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협약회의가 주민협약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27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약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주민협약회의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주민협약회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li> <li>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li> <li>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li> </ol>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p>
<p>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p>	<p>제35조의14(주민협의체에 두는 주민대표회의) 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p> <p>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하여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li> <li>2.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li> </ol> <p>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p> <p>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p>

법령명	조문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p>
	<p><b>제25조(특구위원회의 운영)</b> ①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회의는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특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p> <p>⑤ 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p>

◇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제13조)

시행령(안)
<p><b>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b>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변경·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협정서</li> <li>2.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서</li> </ol>

- 3. 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주민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 변경·폐지의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주민협정 변경·폐지의 인가 신청에 대한 자료 보완, 처리기한 및 인가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④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협의회에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4조에서는 주민협정 변경 또는 폐지의 요건, 협정체결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지위승계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주민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제1항), 인가신청에 대한 자료 보완, 처리기한 및 공고에 관하여 규정한 후(제2항),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3항), 협정체결자의 지위승계자(제4항)를 각각 규정함

(타)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주민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 시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제3항)
- 또한 주민협정체결자의 권위 등(권리 이전 또는 설정 등 포함)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 주민협정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협정체결자의 지위승계자를 명확하게 함(제4항)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경관법 시행령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수가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관련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경우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제14조)

시행령(안)
<p><b>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b>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목표</li> <li>2.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li> <li>3.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 대상 비용</li> </ol>

- 4. 협정체결자의 성명 및 연락처(주민협의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주민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연락처를 포함한다)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해당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5조에서는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제1항), 지원여부의 통보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2항)

**(다) 입법효과**

- 주민협정의 이행지원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포함 내용 및 지원여부 결정결과의 통보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비용의 합리화와 행정절차의 명확화를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령명	조문내용
	<p>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p> <p>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p> <p>6. 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p> <p>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사업 변경계획서(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p> <p>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p> <p>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p> <p>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p> <p>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p> <p>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p>

#### (4) 사업의 시행(제4장)

##### ◇ 사업시행자(제15조)

<b>시행령(안)</b>	<p><b>제15조(사업시행자)</b>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p>
---------------	--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5조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제2호),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규정함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보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생략)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제16조)

<b>시행령(안)</b>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7조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제1항),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제2항 제12호),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 밖의 사항을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 밖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갯벌의 훼손 이력 2. 사후관리계획 3.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 4.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양식업권·광업권, 토지 소유권 등의 현황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계획 및 매수된 토지 등의 현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제17조)

<b>시행령(안)</b>
<p><b>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b>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p>

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인력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서류
4.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용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8조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제1항 본문)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항 단서)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고시(제3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변경의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고(제1항), 사업계획 승인 시 승인권자가 부여한 조건의 이행에 따른 변경 등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한 후(제2항), 승인된 사업계획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3항)

(타)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제1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을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제3항) 주민 등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
-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함으로써(제2항), 사업계획에 대한 불필요한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조사 결과</li> <li>2. 공청회 개최 결과</li> <li>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li> <li>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li> <li>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li> </ol> <p>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p>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p>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li> <li>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li> <li>3.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li> <li>4.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li> <li>5.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li> <li>6.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li> <li>7.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li> </ol>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제5장)

◇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 대신하는 위원회(제18조)

<b>시행령(안)</b>
<p><b>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 대신하는 위원회)</b>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p>

(가) 제정이유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 이에 따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2조에서는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제1항 본문),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다른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회 등이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단서)
- 이와 같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2조에서는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조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조직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규정함

**(ㄷ) 입법효과**

-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음
-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중복으로 설치·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등의 기능의 조정을 통한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ㄹ)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시·군·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3년 이상 환지설계 업무에 종사한 자(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제19조)

시행령(안)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②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 3. 농업·농촌·토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험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일 것
  - 2. 농업과 농촌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이 있을 것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을 것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가) 제정이유

- 전술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 이에 따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3조에서는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제1항 본문),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다른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회 등이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단서)
- 이와 같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2조에서는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조직의 조건(제1항 단서)과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4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제1항), 위원장의 선임방식 및 위원의 자격(제2항), 심의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제3항), 심의회 내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제4항) 등을 각각 규정함

####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기초농촌공

간정책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대체조직의 조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음
-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회를 중복으로 설치·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등의 기능의 조정을 통한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시·군·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3년 이상 환지설계 업무에 종사한 자(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법령명	조문내용
	<p>이내</p> <p>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p> <p>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시·도 정책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5조(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li> <li>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li> <li>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li> <li>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li> </ol> <p>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시·군·구 정책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지원조직의 업무(제20조)

<b>시행령(안)</b>	<p><b>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b>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li> </ol>
---------------	--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원
- 4. 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4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업무 지원조직의 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제2항 제8호),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지원조직의 업무로서 기본방침기초 조사의 실시(제1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제2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원(제3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업무 지원조직의 구성과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여건에 맞는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획기술지원단(이하 “기획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법령명	조문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직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제21조)

시행령(안)
<p><b>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b>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li> <li>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li> <li>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li> <li>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li> <li>마.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li> </ul> </li> </ol>

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업무수행계획서
4.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에서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및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및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1항),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제2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제3항), 공고 및 지정 취소 등(제4항, 제5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확립함
-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및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그 취소에 따른 공고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건축공간연구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법령명	조문내용
	<p>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p> <p>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p> <p>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지원기구</p> <p>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도시재생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p> <p>다.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2-5. (생략)</p> <p>② (생략)</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법 제26조의4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국방 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5. (생략)</p> <p>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p> <p>5. 그 밖에 국방정보기술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p>

법령명	조문내용
	<p>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p> <p>③-④ (생략)</p> <p>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⑥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⑦-⑧ (생략)</p>
<p>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li> <li>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li> <li>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 </ol> <p>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p>	<p>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일 것</li> <li>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가-나. (생략)</li> <li>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li> </ol>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법령명	조문내용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li> <li>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li> </ol>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이하 “기술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li> <li>2. 도시형소공인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장 및 작업 공간 등의 시설과 장비를 적정하게 갖추는 것</li> <li>3. 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의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li> </ol> <p>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2.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li> </ol>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6) 보칙(제6장)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제22조)

시행령(안)

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것
2.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것
3. 정책의 추진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변화 정도를 평가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실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6조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실적평가의 기준·주기·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제3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실적평가의 기준(제1항), 실적평가의 실시주기(5년)(제2항), 실적평가단 구성·운영(제3항), 협조요청(제4항), 실적평가의 공개(제5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바) 입법효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실적평가의 기준과 실시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실적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 계획</li> <li>2. 제출 자료</li> <li>3. 평가 지표</li> <li>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p> <p>③ 제2항 전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p>
도서관법 시행령	<p>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법령명	조문내용
	<p>②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li> <li>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li> <li>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li> </ol>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제23조)

시행령(안)
<p><b>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농촌공간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제1항), 필요한 경우의 협조 요청(제2항) 등에 관하

여 규정함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등 농촌공간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수립·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국토기본법 시행령	<p>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 현황의 시계열·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li> <li>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li> <li>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li> <li>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li> <li>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li> <li>3.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li> <li>4.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li> </ol>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제24조)

<b>시행령(안)</b>
<p><b>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p>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40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부 사무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제2항), 필요한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제1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법 제35조 제1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항)

**(다) 입법효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권한과 실적평가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2. (삭제)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법령명	조문내용
	4. 삭제 ② 삭제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업무의 정지 3.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업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④ (생략)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제25조)

시행령(안)
<p><b>제2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b> ①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매각·대부·양여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4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비율</li> <li>2.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li> </ol>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41조에서는 수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매각·대부나 양여할 수 있는 경우(제4항 전단), 사용 또는 대부로 감면(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수의에 의한 허가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제1항),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기준(제2항)에 관하여 규정함

**(다) 입법효과**

-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에 관한 특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혁신지구계획(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거나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제26조)

<b>시행령(안)</b>
<p><b>제26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b>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이하 “공간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방침기초조사, 기본계획기초조사 및 시행계획기초조사의 내용</li> <li>2.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현황</li> <li>3.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현황</li> <li>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현황</li> <li>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간종합정보체계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44조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하여 구축되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에서 수립·관리하는 정보 및 통계의 내용(제1항), 정확성·신뢰성·최신성의 유지(제2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구축으로 인한 행정력 등의 낭비를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가 정확성·신뢰성·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검증·관리되어 있는지 여부</li> <li>2. 이미 개발·검증·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의 활용가능 여부</li> </ol>

(7) 벌칙(제7장)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시행령(안)	<p>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	--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제2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2]로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 등을 참고로 [별표 2]를 규정함

(타) 입법효과

-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

(략)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3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입법해설

#### (1) 목적(제1조)

<b>시행규칙(안)</b>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가) 제정이유

- 목적규정은 법령의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해당 법령이 달성하려는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히고,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의 경우도 목적규정을 두어 입법 목적 및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령의 개별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의 입법 목적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함

####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을 해석·집행할 때 개별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함

####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법령명	조문내용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촌생활서비스시설(제2조)

시행규칙(안)
<p><b>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b>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에서는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환경을 구성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농촌생활서비스시설”로 정의하고(제13호), 그 구체적인 시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위임한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을 교육, 교통, 문화, 보건 의료 및 보육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별표]로 규정함

(다) 입법효과

-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을 분야별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를 제시하고, 지방세 감면의 대상을 명확하게 함

### (3) 농촌위해시설(제3조)

#### 시행규칙(안)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은 제외하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에서는 “농촌위해시설”을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및 기타 위해시설로 구분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제14호),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등을 규정함(제1호, 제2호, 제3호)

- 다만, 악취배출시설(제3호)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주민의 일터로서의 농촌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되, 농촌위해시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제외의 예외로 규정함

**(타) 입법효과**

- 농촌위해시설을 명시함으로써,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를 제시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략)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p>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① 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p> <p>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li> <li>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중 포사격장 및 미사일기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li> <li>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li> <li>4. 그 밖에 폭발, 진동, 유독성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li> </ol>

- (참고) 현행 법령상 조문 제목에서 “위해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특히 제2항)로부터는 규정형식의 측면에서 약간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4) 통합지침(제4조)**

**시행규칙(안)**

**제4조(통합지침)**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한다.

② 통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국비보조사업의 범위 및 요건
3.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비보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에서는 “통합지침”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으로 정의하고 있어(제16호),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1조(통합지침)의 입법취지, 즉 국비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임을 밝히고(제1항),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비보조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사항을 명시함(제2항)

**(다) 입법효과**

- 통합지침의 제도적 의미 및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절차적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p>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p>	<p>제29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정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시설·장비 등의 설계·구축 기준 및 방법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3.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 4. 지능형교통체계의 유지·보수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과 분석 6.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3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3. (생략) ② 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의 작성 방법 5. 그 밖에 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5) 농촌협약의 신청(제5조)

시행규칙(안)
<p>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 2.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 3.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p>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7조에서는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여금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여(제1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제1호),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제2호),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제3호)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4호)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농촌협약 체결 신청서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정하지 않은 것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년 농촌협약 체결 신청서를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임

**(다) 입법효과**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협약 체결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촌협약의 원활한 제도 운용을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생략)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법령명	조문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주민협정 인가 신청서(제6조)

시행규칙(안)
제6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주민협정의 인가를 위하여 제출하는 인가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제1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주민협정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주민협정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 체결(변경)사유서

법령명	조문내용
	2.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3. 신·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③ (생략) ④ 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사유서 2. 신·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3. 당해 철도사업자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7)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제7조)

시행규칙(안)
<p><b>제7조(주민협의회 설립 승인)</b>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li> <li>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li> <li>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구성원의 명부</li> <li>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3조에서는 주민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그 승인의 방법 및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제3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주민협의회 승인 신청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 및 첨부서류(주민협의회 운영규정,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서 등)을 규정함

(다) 입법효과

- 협정체결자가 주민협의회를 설립하여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식과 첨부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협회의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p>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li> <li>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li> <li>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li> <li>4.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li> </ol>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제8조)

<b>시행규칙(안)</b>
<p>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p>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가) 제정이유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수행 시 명확한 위탁수수료 기준이 없어, 다른 개발법령에서 명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이 발생함
- 예컨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서는 위탁수수료의 지급 근거 및 요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 지역개발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의 지급 및 요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위탁수수료의 근거가 없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둔 후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음
- 다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 각각 하나의 조문씩 늘어나 “불필요한 소모적 과잉입법”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통합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함

####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타) 입법효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대가의 지급 근거 및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사업시행의 환경을 조성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 ① (생략) ②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도시개발법	법률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시행규칙	제18조(위탁 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신항만건설촉진법	법률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법령명		조문내용
		한다.
	시행령	제35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과 위탁수수료)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우편법	시행령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수료 및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 등)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위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지급한다. ② (삭제) ③ 우편물 집배업무, 운송업무와 발착(發着)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우편물의 공공성·안전성 및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지급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조(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①-② (생략) ③ 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위탁수수료의 요율)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다.
한국 도로공사법	법률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의6(업무 위탁수수료)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제9조)

**시행규칙(안)**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제1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규정함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서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시행의 절차적 완결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

법령명	조문내용
	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제10조)

시행규칙(안)
<p><b>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b>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지정 신청서(제2항)와 그 밖에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6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하고(제1항), 신청 내용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협조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2항)

(타) 입법효과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제정함으로써, 농촌공간 정책지원기관의 원활한 지정과 관련정책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함

(략)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1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제11조)

시행규칙(안)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제정이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4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 이와 함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42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서는 공간정비 사업,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등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 또는 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ㄷ) 입법효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 또는 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p>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li> <li>2. 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li> <li>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li> </ol>

(12) 규제의 재검토(제12조)

시행규칙(안)
<p>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가) 제정이유

-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농촌위해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강한 규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방안이 필요함

(나) 제정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농촌위해시설 인정의 규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의 재검토를 의무화함

(다) 입법효과

- 농촌위해시설 인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규제적 합리성을 강화하고, 농촌위해시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기한: 2017년 1월 1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거래·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2017년 1월 1일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20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제정 연구

법령명	조문내용
	7년 1월 1일 2. 삭제 <2019. 11. 14.> 3. 제12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2017년 1월 1일

## 4 하위법령 제정(안) 별표 및 서식

### (1) 시행령 별표

#### (가) 시행령 [별표 1]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 나.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도로·지형·지물(地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가급적 마을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위해시설의 근거리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 시설을 집적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 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이전(移轉) 및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라.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

- 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일 것
  - 나.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축산물 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다만, 가축 사육시설 및 축산물 가공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의 시설을 친환경 또는 현대적 시설로 개수·보수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축산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라.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일 것
  - 나.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생산, 제조·가공 및 유통·관광 등의 시설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 다. 제조·가공 공장 또는 농촌위해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라.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일 것
  - 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일 것

-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라.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6.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농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 나. 경관작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을 말한다)을 집단화하여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우수경관의 관리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일 것. 이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업유산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 지정지역, 또는 그 밖에 농업적·생태적·지식적·문화적·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 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핵심자원이 분포한 지역 또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와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범위의 지역일 것

## (나) 시행령 [별표 2]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주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정 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 호	100	150	200
나. 법 제37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 호	100	150	200

## (2)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가) 시행규칙 [별표 1]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촌생활서비스시설** (제2조 관련)

1. 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2. 교통시설: 「교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3.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4. 보건의료시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6.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상업 및 생활편의 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8. 장사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9.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10. 행정안전시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경찰서
11. 휴양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제5호·제8호·제9호·제10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 체험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
12. 그 밖의 시설: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인가**  
**주민협정 [ ]변경인가 신청서**  
**[ ]폐지인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주민협정 명칭		
주민협정 체결자 (주민협의회)	성명 (주민협의회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민협정의 주요 내용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신청 사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협정의 [ ]인가 [ ]변경인가 [ ]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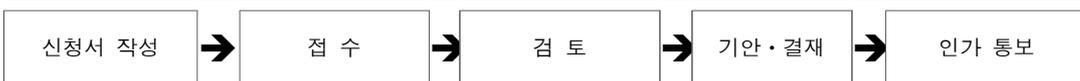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가 신청 시: 주민협정서 2. 변경·폐지 인가 신청 시 가. 주민협정서 나. 협정인가자 과반수 동의서 다. 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 라.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협의회	구성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운영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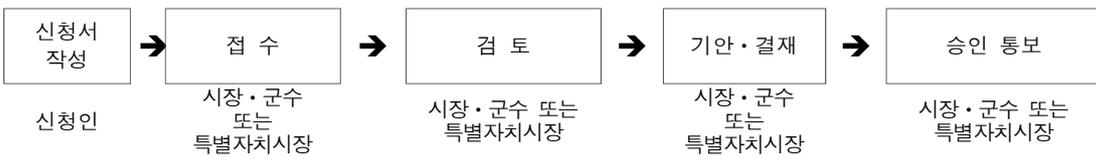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구성원의 명부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라)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사업지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명칭	
	사업지역 위치	사업면적 m <sup>2</sup>
	사업의 목적	
	주요 사업내용	
	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 시행기간
변경사항	변경사항 및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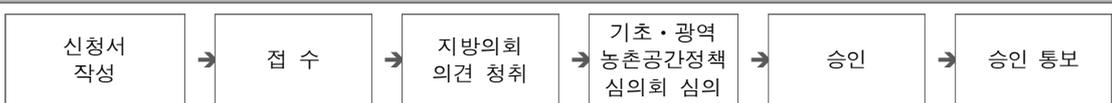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인력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서류 4.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마)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중앙  
[ ]광역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기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 ]중앙 [ ]광역시 [ ]기초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업무수행계획서 4.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담당부서)

## 5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개선과제****(1) 농촌위해시설의 정의****(가) 현황분석**

-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말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핵심 중의 하나에 해당하며, 이로부터 농촌위해시설의 개념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농촌위해시설”을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농촌위해시설의 용어에 관한 것으로서,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상태”를 의미하는 “위험”보다 포괄적인 용어, 즉 “위험과 재해를 아우르는 말”로서 “위해”를 사용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등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설령 오염물질 등을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위해를 가한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기 어려움

**(나) 정비방향**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의 정의에서 열거하고 있는 농촌위해시설의 종류를 삭제하고, 해당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용어를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수정하고, “계획수립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농촌주민의 건강,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높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 제14호 개정방향)

현 행	개정안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u>농촌위해시설</u>”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u>위해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u>을 말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u>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u>”이란 계획수립권자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농촌주민의 건강,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높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을 말한다.</p>

(2) 통합지침의 정의

(가) 현황분석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 제16호에서는 “통합지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1조(통합지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제2조(정의)와 제21조(통합지침)에서 통합지침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내용으로부터는 통합지침의 개념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정비방향**

- 제2조(정의)에서 통합지침을 삭제한 후, 제21조(통합지침)에서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정의조항 자체의 문제**

**(가) 현황분석**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으며(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에서는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 이질적인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일반성 및 입법기술적 기준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정비방향**

- 따라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1항으로 규정하고, 제17호를 제2항으로 수정하여, 법률의 일반성과 입법기술적 적절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기초조사의 실시**

**(가) 현황분석**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즉 기본방침(제6조), 기본계획(제7조) 및 시행계획(제10조)의 수립 또는 변경을 규정하면서, 각각 해당 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본방침에서는 실시 근거(제6조 제4항)만을, 기본계획에서는 실시 근거(제7조 제4항)와 위탁근거(제5항)를, 시행계획에서는 실시근거(제10조 제4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나) 정비방향**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제2장)이라는 별도

의 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조사의 규정방식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실시근거, 위탁근거, 자료요청 등 포함)

## (5) 사용료·대부료 감면

### (가) 현황분석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41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의 실시에도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항)
-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즉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불품 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나) 정비방향

-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없어 보이며, 국·공유재산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서 그 범위 및 한계를 자기 완결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41조 제4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과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정안 제25조 제2항의 내용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6) 시행계획 확정절차 개선

### (가) 현황분석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1조에서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제2항)
- 또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3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

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항),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확정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가 지정·고시되는 법적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산지 분야 등에 관한 타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함

(나) 정비방향

-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의 근거가 되는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확정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농·산지 분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1조 제2항 개정방향)

현 행	개정안
<p>제1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u> 및 <u>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7) 토지 등 수용의 법적 기반 강화

(가) 현황분석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0조에서는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본문)

-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에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단서)
- 또한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토지나 물건의 사용, 제거 또는 변경 및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잔여지 수용 또는 사용 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제2항),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한 경우의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제3항)
- 그리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제5항)
- 이와 같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토지보상법 제2조(적용대상)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거 또는 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수용법 [별표]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등 수용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정비방향

- 토지 등 수용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토지보상법 [별표]를 개정하여 토지보상법의 주된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토지보상법 [별표]의 개정과 함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도 제25조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1조 제2항 개정방향]

현 행	개정안
<p><b>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b>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li> <li>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li> </ol> <p>〈신설〉</p>	<p><b>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b>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li> <li>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li> </ol> <p>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p>



## 부록-1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2.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3. 농촌 경제·산업 구조 현황
4.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분포 및 이용·제공 현황
5. 농촌 토지 이용 및 경관 보전·관리 현황
6. 농촌의 난개발 요소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7. 그 밖에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방침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및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공간의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할 것
  2. 농촌공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것
  3. 농촌의 생활기능과 생산기능을 위한 토지의 조화로운 이용을 촉진할 것
  4. 농촌의 개발·이용·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
  5. 농촌 자원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할 것
-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본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기초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기본계획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일간신문,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개최 목적
  2. 개최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4. 그 밖에 공청회의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
2. 기본계획기초조사의 결과(기본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④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목표·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이 공간적으로 통합·연계될 수 있을 것
3.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조화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시행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변경하려는 시행계획의 내용
2. 시행계획기초조사의 결과(시행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④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도서 등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공유지는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 가. 사업 목적
    - 나. 사업 내용
    - 다. 사업 비용
    - 라. 사업 기간
    - 마. 기대 효과
    - 바.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 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나.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 다. 농촌특화지구의 정비 및 관리 방향
    - 라.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 마.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 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사.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및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

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2. 협약의 변경·해지
3.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4. 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공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주민협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인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주민협정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 여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내용(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협정체결자의 투표로 선임하고,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주민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해

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회 회의는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표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협의회가 정한다.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변경·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정서
2.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서
3. 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주민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 변경·폐지의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주민협정 변경·폐지의 인가 신청에 대한 자료 보완, 처리기한 및 인가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타,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④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협의회에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 대상 비용
  4. 협정체결자의 성명 및 연락처(주민협의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주민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연락처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해당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5조(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인력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서류
  4.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용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농업·농촌·토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험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일 것
2. 농업과 농촌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이 있을 것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업무수행계획서
4.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실적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것
  2.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것
  3. 정책의 추진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변화 정도를 평가할 것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5년마다 실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실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매각·대부·양여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비율
2.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26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이하 “공간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침기초조사, 기본계획기초조사 및 시행계획기초조사의 내용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현황
3.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현황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현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간종합정보체계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제7장 별칙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2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은 제외하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통합지침)**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한다.

② 통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국비보조사업의 범위 및 요건
3.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비보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
2.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
3.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구성원의 명부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